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2160
-----------	------

2017년 11월 6일  
교 육 위 원 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7년 10월 24일

3. 상정일자

○ 제27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7년 11월 6일 상정·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정병익)

1. 제안이유

○ 적정규모학교 설립 및 혁신적인 교육공간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한시적으로 지방서기관 정원책정이 승인되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시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인 교육공간기획 전담부서의 장인 지방서기관 1명을 정원의 총

수 및 일반직공무원 정원으로 증원 책정함(안 제2조 및 별표 3).

나.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한시기구의 존속기간과 동일하게 2년으로 정함(안 부칙).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17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160호로 제출되어 2017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59호)와 관련하여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전담부서 장의 정원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 제2조와 [별표3]은 교육부의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승인 검토결과 통보’(지방교육자치과-3852,2017.8.23)에 따른 한시기구의 부서장(4급) 정원이 증원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원: 7,112→7,113, 일반직 정원: 6,649→6,650, 4급: 38→39)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59호)와 연동하여 함께 개정되는 사항인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 및 제18조에 따라 조례 개정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sup>1)</sup>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정원 책정의 승인) ① 교육감은 일반직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없을 경우 및 직렬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감에 소속된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청의 과장·담당관 이상

2. 교육지원청의 국장 이상

3. 직속기관의 부서장(일반직 4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 이상 제18조(한시정원)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에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하여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7,112명” 을 “7,113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6,647명” 을 “6,648명” 으로 한다.

별표 3은 별지와 같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제2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7,112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본청 · 교육지원청 ·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u>6,647명</u></li> <li>3. (생략)</li> </ol> <p>[별표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 <u>7,113명</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 ..... ..... .....</li> <li>3. (현행과 같음)</li> </ol> <p>[별표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계</th> <th>시의회 사무처</th> <th>본청</th> <th>교육 지원청</th> <th>공립의 각급 학교</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u>7,112</u></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교육감</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u>6,649</u></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3급</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9</td> <td></td> <td>9</td> <td></td> <td></td> </tr> <tr> <td>3·4급</td> <td>3</td> <td></td> <td>3</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u>38</u></td> <td></td> <td><u>27</u></td> <td>11</td> <td></td> </tr> <tr> <td>4·5급</td> <td>6</td> <td></td> <td>6</td> <td></td> <td></td> </tr> <tr> <td>5급 이하 소계</td> <td>6,569</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9</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u>7,112</u>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u>6,649</u>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u>38</u>		<u>27</u>	11		4·5급	6		6			5급 이하 소계	6,569					전문경력관 소계	9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계</th> <th>시의회 사무처</th> <th>본청</th> <th>교육 지원청</th> <th>공립의 각급 학교</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u>7,113</u></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교육감</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u>6,650</u></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3급</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9</td> <td></td> <td>9</td> <td></td> <td></td> </tr> <tr> <td>3·4급</td> <td>3</td> <td></td> <td>3</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u>39</u></td> <td></td> <td><u>28</u></td> <td>11</td> <td></td> </tr> <tr> <td>4·5급</td> <td>6</td> <td></td> <td>6</td> <td></td> <td></td> </tr> <tr> <td>5급 이하 소계</td> <td>6,569</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9</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u>7,113</u>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u>6,650</u>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u>39</u>		<u>28</u>	11		4·5급	6		6			5급 이하 소계	6,569					전문경력관 소계	9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u>7,112</u>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u>6,649</u>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u>38</u>		<u>27</u>	11																																																																																																																																													
4·5급	6		6																																																																																																																																														
5급 이하 소계	6,569																																																																																																																																																
전문경력관 소계	9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u>7,113</u>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u>6,650</u>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u>39</u>		<u>28</u>	11																																																																																																																																													
4·5급	6		6																																																																																																																																														
5급 이하 소계	6,569																																																																																																																																																
전문경력관 소계	9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 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 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연구사 소계	14					연구사 소계	14				
별정직 계	2					별정직 계	2				
5급상당 이하 소계	2					5급상당 이하 소계	2				
특정직 계	460					특정직 계	460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0		28	22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0		28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410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410				
<u>&lt;신 설&gt;</u>						<u>&lt;비고&gt; 제2조에 따른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본청의 지방서기관 1명으로 한다.</u>					